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28 조례 제 377호
개정 2010. 12. 28 조례 제 70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일부개정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일부개정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7. 10.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과 산모,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삭제 (2017. 10. 16)

제3조(지원기준) ① 셋째 이후 출생순위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쌍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0. 16)

1. 셋째아 - 출산지원금 1회 100만원 지급
2. 넷째아 - 출산지원금 1회 200만원 지급
3. 다섯째아 이상 - 출산지원금 1회 300만원 지급

②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7. 10. 16)

③ 출생아의 순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지원한다. (신설 2017. 10. 16)

[전문개정 2010. 12. 28]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28, 2012. 11. 15)

②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 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 (신설 2016. 5.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 10. 16)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6)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7. 10. 16]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1. 삭제 (2017. 10. 16)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17. 10.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울행정시스템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 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기재 등)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개정 2017. 10. 16)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6)

[제목개정 2017. 10.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28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10. 1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10. 16)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0. 16)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연번	지원대상자		신생아		출생 순위	거주기간 (년개월)	읍면동	나머지 주소	핸드폰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지급 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